

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. 11. 25 선고 2020가단34028 판결 [진정명의회복을 위한
소유권이전등기 청구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연, 정은재, 황찬근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완수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주

담당변호사 강구태

변론 종결 2020. 11. 4

판결 선고 2020. 11. 25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
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이고, 그 부친인 C은 1979년경 충남 예산군 D 토지 3,382m² 위에 무허가주택을 건축한 후 거주하였다.

그 후 현재 피고와 그 가족들은 위 무허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 일부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 1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

가. 당사자의 주장

(1) 원고의 주장

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는 1979. 3. 6. 충남 예산군 D 토지에서 분할된 것이다.

본래 위 D 토지는 비록 C의 명의로 등기된 바 있으나, 원고가 그 자금을 C에게 주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한 것이다.

따라서 원고가 위 D 토지의 소유자이므로, 위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다.

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(2) 피고의 주장

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다.

나. 판단

구 민법 이후 민법 제186조는 "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"고 규정하여 구 민법상의 대항요건주의에서 성립요건주의로 그 입장을 바꾼 바 있다.

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80. 4. 4.경 부모님에게 돈을 맡겨서 소외 E으로부터 위 D

토지를 대리하여 구매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바, 이미 그 시기는 위 민법 제186조가 시행되고 있던 시점이고, 위 D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없다.

따라서 원고는 위 D 토지 및 위 토지에서분할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 할 수 없다.

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김주완

별지